

매체환경 변화와 언론윤리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 중재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언론자유화를 포함해서 세번의 매체환경변화를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경험했던 첫번째 언론자유화는 해방에 따른 매체환경변화이고, 두 번째 언론자유화는 4·19 혁명에 따른 매체환경변화이다.

자유화가 자유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사회의 문화적 토지를 우선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하천부지에 고등소재를 재배하려면 우선 하천부지에 흩어져 있는 병조각, 비닐조각, 돌조각, 쓰레기 등을 말끔히 걷어 내어야 한다.

토지의 정지작업을 우리사회의 문화로 대치해도 좋다. 우리사회는 누가 보아도 해방 후 그리고 4·19 후 자유화의 씨앗이 꽃을 피울 만큼 자유화되고 민주화되지 못했다. 자유화의 문화가 부재한 곳에 자유화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 보아야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언론자유화의 내용은 반드시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자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물론 발행의 자유는 언론자유화의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으로 언론의 자유화가 곧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두 번의 사례에서 언론자유화의 내용은 곧 매체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아무런 책임의 범위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체의 수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하게 된 사태가 자유화의 열매를 맺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4·19 혁명 후, 우리나라는 역사상 두 번째로 완전한 발행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자유당독재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무제한의 자유상태를 초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었다고 평가된다.

한국신문연감에 의하면 등록제 실시 이전과 실시 6개월이 지난 1960년 말 사이에 일간지 56개, 주간지 100개, 월간지 301개, 기타 94개로서 총 551종이던 것이 일간지 389개, 주간지 457개, 월간지 444개, 기타 85개로서 총 1,375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언론의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게 언론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언론의 질적저하 가운데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상황은 언론의 도덕적 타락상태였다고 평가된다. 언론자유화의 물결은 소위 말하는 부패기자, 사이비기자, 공갈기자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들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윤리 성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폭로를 위한 폭로, 비방을 위한 비방,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자행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역사상 세 번째로 언론자유화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언론자유화의 조치에 따라서 우선 일간지의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방송국과 통신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주간지와 월간잡지들이 1988년 언론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사회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신문·잡지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다음 사항이 중시되어야 한다. 즉,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매체의 적정 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없이 많은 신문·잡지·도서의 홍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출간될 정기간행물이 모두 개인의 권리, 사회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익에 봉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매체의 수가 많으면 그 가운데서 몇 개의 매체는 언론의 윤리문제를 야기하게 될 는지도 모른다. 매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개연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 언론인의 자율규제 수준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후진적인 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된다. 정치적 통제는 사라지고 자율규제는 아직까지 덜 성숙한 공백기에 사회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는 우리사회가 채택한 사회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구가 아니다. 언론중재제도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관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사전심사나 규제장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보도가 발생한 후에 작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후장치이지 결코 사전장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재제도는 사법적 규제가 아니고 전치제도에 해당된다. 언론문제에 관한 한 사법적 제도는 무의미하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언론과 시민의 관계에 있어서 언론은 항상 시민보다는 우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이 함께 사법적 심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문제에 관한 한 시민에게는 막대한 소송비용, 긴 소송기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직·간접적 압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은 소송에 의한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은 공히 합의를 이룩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중재제도는 그러한 합의를 이룩하는 기관이다. 중재 제도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언론창달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해당된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경우 오보발생의 간접적인 압력이 되고, 시민의 경우에는 오보에 의한 권익침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중재제도는 이미 작년 말에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 50 조에 법적근거를 두었으면, 이제는 새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8 조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추후보도청구권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협의를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해 무죄추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법적 권리 및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이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동 법의 규정에 준용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 추후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도 중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이 형사피의자의 명예회복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수준의 발전면에서 볼 때 고무적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세 번째로 매체환경변화를 통해서 언론자유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했다.

그러나 매체환경변화에 따라서 짧은 기간동안에 양산된 수많은 기자들 가운데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인 기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출판물들은 독자의 호기심이나 기업의 이해를 위해서 내용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자유와 윤리간의 갈등을 조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지름길은 기존하는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작업이라 평가된다.

중재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언론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 (신문학 박사)

□ 저술: 「신문학이론」 (공저), 「언론통제이론」 (공저) 「국제 커뮤니케이션론」 외 논문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